

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

1. 제출자 명세																	
법인명(상호)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
소재지																	

2. 국외 지배주주 명세																	
①법인명						②소재국						③국가코드					
④소재지																	
⑤위탁증권사명 (Employee Equity Plan Agency)						⑥화폐단위											

3. 국외 주식매수선택권·주식기준보상 명세																	
⑦임원 또는 종업원 인적사항		주식매수선택권 부여·행사 내용							주식기준보상 지급 내용					⑳이익 내용			
성명	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	⑧부여 연월일	⑨ 종류	⑩부여 수량	⑪행사 연월일	⑫행사 수량	⑬주당 행사가격 (현지통화)	⑭행사일 주당시가 (현지통화)	⑮지급 연월일	주식			금전		현지 통화	원화	
										⑯ 종류	⑰지급 수량	⑱주당 지급가격 (현지통화)	⑲지급일 주당시가 (현지통화)	⑳지급 금액 (현지통화)			

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또는 종업원(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여, 이하 “임원등”이라 합니다)이 과세기간에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(이하 “국외지배주주”라 합니다)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임원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으로서, 해당 임원등이 부여일·종류 등이 서로 다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(이하 “주식매수선택권등”이라 합니다)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 주식매수선택권등별로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,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서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1. ①법인명란: 임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 또는 지급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, 머리글자(Initial)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.
2. ②소재국란 및 ③국가코드란: 국제표준통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되,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“ZZ”를 적습니다.
3. ④소재지란: 국외지배주주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번지(Number), 거리(Street), 시(City), 도(State), 우편번호(Postal code), 국가(Country) 순으로 적고, 우편사서함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.
4. ⑤위탁증권사명란: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등의 관리(부여·행사·양도)를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을 영문으로 적되, 머리글자(Initial)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.
5. ⑥화폐단위란: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(예: 미국의 경우 USD)로 적습니다.
6. ⑦임원 또는 종업원 인적사항란: 해당 과세기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임원등의 인적사항을 적되,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7. ⑧부여연월일란, ⑩행사연월일란 및 ⑯지급연월일란: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·행사 또는 지급 날짜를 연, 월, 일(YYYY-MM-DD) 순으로 적습니다.
8. ⑨·⑰종류란: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[예: Stock Option의 경우 “SO”, Employee Stock Plan의 경우 “ESPP”, Restricted Stock Unit의 경우 “RSU”, Stock Appreciation Right의 경우 “SAR”, Performance Stock Unit의 경우 “PSU”].
9. ⑳이익 내용란: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[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⑫×(⑭-⑬),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⑰×(⑱-⑱) 또는 ⑳]을 적되, 원화란에 있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일 또는 지급일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